

#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 경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근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해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이 어떤 이유에서 해체되고 있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경기도 자료 일부와 한국 남성과 이혼한 여성이민자 심층면접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민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사별한 사람은 현재 배우자와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거나 교육수준은 낮은 반면 나이가 많고, 국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중국 조선족 국적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무능력, 배우자 외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여성이민자의 경우는 남편의 학대나 폭력, 음주와 도박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정신장애를 비롯한 언어소통이나 대화기술 부재, 경제적 무능력, 음주 및 구타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과 사후적으로 이혼한 여성이민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국제결혼, 가족해체, 이혼원인, 정책대안

본 연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년 ‘연구직 우수연구활동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이며, 2010년 후기 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논문 수정에 유익한 제언을 주신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 투고일: 2011.6.8    ■ 수정일: 2011.8.30    ■ 게재확정일: 2011.9.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 이혼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직가족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고, 2003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예를 들면, 2003년 167,100건까지 증가하던 이혼이 2004년 약 149,400건으로 10.6%가 감소하였고, 2008년도 또한 116,500건까지 감소하여 2007년 (124,100건) 대비 7.5%p가 감소하였다(통계청, 2008). 이처럼 이혼이 최근 감소한 것은 2008년 6월에 도입한 이혼숙려제도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우리사회 이혼을 감소와 달리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이혼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이혼이 증가한 것은 국제결혼의 양적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이혼은 2002년 국내 이혼의 1.2%를 차지하였지만, 2006년 4.9%까지 증가하였고, 2007년 7.0%, 그리고 2010년 9.6%까지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 사회구성의 핵심단위로서 가족해체가 곧 사회해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불행이 국가-사회의 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해체는 당사자를 비롯하여 가족구성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가족해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나 가족해체에 의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은 매우 필요하다.<sup>2)</sup>

---

1) 합의 이혼 혹은 재판이혼이든 법원의 결정문을 받기 전에 자녀가(미성년) 있으면 3개월간, 없으면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갖되 상담 등을 통하여 이혼의 아픔과 이혼 후의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를 권고하는 방안이다. 이런 의무적 내용 때문에 2008년 이혼은 단기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효과가 ‘지연된 이혼’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2) 가족해체는 넓은 의미에서 ‘가족단위의 정상적인 기능의 붕괴처럼 가족결속의 파괴’를 의미하지만, 협의로는 ‘별거, 이혼, 유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또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부재함으로써 가족이 구조적으로 불완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김승권, 2002; 최경석 외,

가족해체의 전형적 유형인 배우자 관계의 단절은 배우자의 사별, 이혼, 별거, 유기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특히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경우 가족해체 이후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혹은 일부는 불법체류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등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연구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이혼 관련 연구는 이혼의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박재규, 2007; 이계승, 2010; 주미연, 2010). 최근 결혼이민자 이혼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및 이혼 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질적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이혼과정에 대한 배우자의 폭력이나 음주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을 통해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박미정, 2011). 국제결혼 이민자 이혼실태의 경우는 최근 이루어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연구를 비롯하여 경기도, 부산 지역 등에서 지역단위 자료 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이혼에 대한 원인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김승권 외, 2010; 박재규, 2010; 김현지 외, 2010).

본 연구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경기도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이혼 원인 및 특성을 검토하며, 이혼한 이주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혼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족해체, 특히 이혼에 의한 여성이민자의 해체원인을 검토하고,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이민자가족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원방안 및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이민자 중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하며,

둘째, 국제결혼 이민자 중 가족해체 상태에 있는 이민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이민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하여 국내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을 비교하며,

셋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민자의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및 가족해체 이후 겪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 II.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국제결혼 이민자의 가족해체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만 자료접근의 한계성 때문에 제한된 수준에서 진행되다가 최근 국제결혼 이민자의 이혼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의 기본적 논의를 검토한 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혼 및 유사 연구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가족구조에서 유배우자 가구와 배우자 사별에 의한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배우자의 이혼이나 혹은 미혼상태에서 가구를 구성한 규모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에 의한 가구 비중은 2005년 5.6%에서 2010년 7.4%로 증가하였고, 2050년 10.4%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통계청, 2010).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등과 같은 가족해체는 당사자 및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배우자 상실에 따른 가족해체 연구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 집중되었다. 그 이유는 배우자 상실이 여성에게 실질적 소득감소와 경제적 빈곤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의 경우 실제 소득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혼 여성의 생활수준이 30% 정도 감소하였다(Weitzman, 1977, 김혜영 외, 2008 재인용). 여성가구주 빈곤율도 이혼 전 13%에서 이혼 후 32%로서 19%p가 증가하여 배우자 상실에 따른 여성가구주의 빈곤 심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윤홍식, 2003).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인적자원에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참여에 제약 받고 있으며, 특히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등 가족 내 돌봄노동을 전담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기회를 제약 받아 경제적 중속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미취업상태가 지속될 경우 만성적 재정적자를 비롯하여 정신적인 불안과 우울, 고통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Kessler & Essex, 1982; Booth & Amato, 1991; 전신현, 2007 연구 재인용).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가구주 중에서 교육수준이 낮고, 비정규직에 종사할 경우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박재규, 2009),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임시일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윤성호, 2008).

이혼에 관한 기존의 설명은 크게 이혼 증가에 대한 거시적 사회변화 관점의 설명과 이혼 발생원인에 대한 이혼자의 특성 분석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이혼증가 원인을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제위기,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에 의해 이혼이 상이하다고 보고 있다. 즉 이혼증가가 시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산업화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개선에도 기여하였다. 그 결과 과거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적 제도 하에서 억눌려 왔던 여성이 자신의 자아와 권익증진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면서 이혼이 증가하였다(곽배희, 2001). 또한 우리 사회 IMF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은 가족해체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위기 하에서 실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가족해체가 매우 높았다(곽배희, 2001; 정기선, 2000).

다음으로 이혼은 누가 하는가 혹은 이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둔 연구에 의하면, 이혼자의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 즉 이혼결정 요인으로서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동거, 시부모 관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연령은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데, 30-40대 이혼율이 높고 50대 이혼율이 낮다고 한다(곽배희, 2001; 통계청, 2008). 그렇지만 교육수준은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교육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결혼생활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명신, 2006). 소득은 이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의사는 감소하고 반대의 경우 이혼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명신, 2006; 조성희, 1999). 그리고 자녀 및 시부모의 동거도 이혼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는 이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시부모 동거는 이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곽배희, 1944; 박애경, 2006). 또한 결혼만족 수준과 부부간의 상호의사소통 수준이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결혼생활 만족 수준은 결혼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만일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게 되면 결혼생활이 불행하게 되거나 혹은 이혼에 이른다(곽배희, 2001).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는 결혼만족과 이혼 결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은 경험 연구에서 발견되고 있다(Bodenmann, 1997; Gogge & Bradbury, 1999. 이경성, 2001 연구에서 재인용). 즉 이혼한 사람의 경우 의사소통에서 덜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이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도 부부의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대수준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과거에 대한 투자가 낮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혹은 공유재산이나 공유기억이 적은 경우,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적은 경우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혼 가능성이 높다(Rusbult, 1983; 이경성, 2001 연구 인용).

이상과 같이 이혼은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사회계층), 자녀동거, 시부모 관계 등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하여 부부만족도 및 의사소통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는 일반 여성들과 매우 상이한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이 때로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들 요인들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게는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사회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국제결혼 출발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재규, 2009). 예를 들면, 국제결혼 여성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한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결혼하고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즉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은 남편과 그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의 가부장제적 성문화 및 가족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기피함으로써 스스로를 고립시켜 부부 및 가족갈등을 겪으며, 여기에 남편의 대화기술 부족은 국내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박재규·이윤애, 2005; 박재규, 2007; 양선화, 2004) 더욱이 국제결혼은 매우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며, 또한 한국 남성에 대한 정보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혼 성격을 띠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김상임, 2004; 박재규 외, 2005; 박현정, 2004; 설동훈 외, 2005; 2006; 안현정, 2003; 이해경, 2005; 최진영, 2004).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이민자가 이혼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혹은 본국으로 추방되는 두려움 때문에 결혼생활 만족 수준이 낮거나 혹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박재규 외, 2005). 최근들어

국제결혼 이민자의 인권보호 및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부당한 사례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민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의하면, 남편 정보 차이, 부부생활 만족도, 남편의 부당행위 여부, 한국어 사용 능력, 자녀 유무, 시부모 동거 여부, 국적 등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전에 알고 있던 정보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에 비해 차이가 클수록, 부부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남편의 부당행위를 경험할수록, 한국어 사용능력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을수록, 또한 일본 국적에 비해 필리핀과 조선족 여성이민자의 이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재규, 2007; 이정희, 2006). 그러나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과 시부모 동거여부, 부부만족, 남편 정보의 일치성, 부부싸움, 한국어 사용능력, 동거기간, 사회단체 참여 여부 등도 이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미정, 2011; 이규삼, 1999; 이명신, 2006; 전만길, 2005; 주미연, 2010).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생활 적응과정에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국제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지는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소외감이나 외로움, 정체성 혼란 등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주재 외, 2010).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거나 또는 자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서로의 지식이나 자원 등을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을 갖게 됨으로서 안정된 가족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박순희 외, 2010; 양하연, 2009; 이주재 외, 2010).

그리고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부부생활 및 가족생활 적응에 관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부부간의 연령 차이와 교육수준 상이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즉 한국 남성이나 외국인 여성보다 나이가 다소 많거나 혹은 동갑일 경우 결혼관계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남편의 나이가 부인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 결혼지속 기간이 짧아진다고 한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김두섭·이명진, 2007), 결혼기간 지속성과 관련하여 베트남, 필리핀, 몽고,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의 경우 결혼을 지속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김두섭, 2006).

### Ⅲ. 연구방법 및 내용

#### 1. 자료의 구성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 중 이혼(사별 포함)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가족해체를 경험한 이민자와 그렇지 않고 배우자와 살고 있는 이민자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비롯하여 국내생활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해체 이민자의 생활안정 및 가족해체 예방 정책을 제안할 목적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박재규, 2010)의 일부 내용 및 이혼 여성이민자 대상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sup>3)</sup>

국제결혼 이민자 중 가족해체 상태에 있는 이민자와 그렇지 않은 이민자의 특성 및 일상생활을 비교할 목적에서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이민자 1,031명(이혼 이민자 838명, 사별한 이민자 193명)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 1,070명을 이용하였다.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이민자 1,031명은 2009년 수집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포함된 경기도 다문화가족 전체 응답자 16,162명(무응답 155명은 제외)의 7.4%에 해당된다. 반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 1,070명 표본선정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15,131명을 대상으로 SPSS 프로그램 임의 추출(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약 7% 정도 추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여성이민자의 이혼원인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조사 당시 이혼 상태에서 국내 살고 있는 여성이민자 7명을 면접하였다. 이들에 대한 접근은 경기도내 이주여성 쉼터 2곳을 통해 현재 쉼터에 머물고 있거나 혹은 쉼터의 도움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소개받아 연구자가 직접 만나 면접하였다. 이주여성 쉼터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 및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배우자의 방문이나 위협 등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비공개 상태에 있다. 본 연구가 심층면접한 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경기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박재규, 2010)는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집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경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중 이혼여성 심층면접 대상

구분	여성이민자							배우자			
	국적	나이	교육수준	결혼시기	이혼시기	결혼유형	자녀	나이	교육수준	결혼유형	
A	필리핀	31세	고졸	2005	2010	초혼	5세	41세	고졸	재혼	
B	베트남	30세	고졸	2009	2010	초혼	1세	40세	-	초혼	
C	베트남	25세	고졸	2007	2009	초혼	-	51세	고졸	재혼	
D	중국(조)	45세	고졸	2006	2010	재혼	-	49세	고졸	재혼	
E	중국(조)	43세	고졸	2006	2010	재혼	-	57세	국졸	삼혼	
F	중국(한)	48세	고퇴	2008	2010	재혼	-	48세	고졸	재혼	
G	중국(한)	37세	고졸	2005	2010	초혼	5세, 4세	45세	중졸	재혼	

## 2. 변수 및 내용

본 연구는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 중 가족해체 상태에 있는 이민자와 일반가족 이민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며, 가족해체 원인 및 제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표 2>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sup>4)</sup>

4) 국제결혼 이민자의 가족해체에서 중요한 변수인 부부의 연령 차이, 부부관계 만족도, 의사소통, 시부모 동거 등 가족관계 문항에 대한 자료가 생산되지 않아 본 연구는 사용하지 못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결혼이민자의 이혼 전의 생활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전체 결혼이민자의 조사 당시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혼 여성이민자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 2. 주요 변수와 측정 방법

영역	변수	측정
가족해체	혼인상태	1 배우자 동거, 2 배우자와 이혼, 3 배우자 사망
	이혼원인	1 배우자 외도, 2 성격 차이, 3 배우자 가족 갈등, 4 배우자 경제적 무능, 5 배우자의 학대와 폭력, 6 음주와 도박, 7 정신장애 및 기타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	1 여성, 2 남성
	교육수준	1 초등학교 이하,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 이상
	거주지역	1 도시지역, 2 도농복합지역, 3 농촌지역
	국적	1 중국 한족, 2 중국 조선족, 3 일본 등
	거주기간	1 1년 미만, 2 1~2년, 3 2~5년, 4 5~10년, 6 10년 이상
한국사용능력	말하기~쓰기	1 매우 잘 한다 ~ 5 매우 서툴다
결혼과정 및 가족구성	결혼경로	1 결혼중개업, 2 가족친척, 3 친구동료, 4 종교, 5 스스로, 6 기타
	입국목적	1 결혼, 2 취업, 3 친척방문, 4 사업 및 업무, 5 유학, 6 기타
	결혼유형	1 부부 초혼, 2 부인 초혼 남편 재혼, 3 부인 재혼 남편 초혼, 4 부부 재혼
취업상황	취업여부	1 현재 취업 중, 2 한국에서 일한 적 있으나 지금 안함, 3 일한 적 없음
	고용지위	1 상용, 2 임시, 3 일용, 4 자영업자, 5 고용주, 6 무급가족봉사자, 7 기타
	미취업이유	1 적성 불일치, 2 근로조건 불일치, 3 자녀양육, 4 한국말 서툴러, 5 가족반대
	취업희망여부	1 희망, 2 희망하지 않음
	취업지원	1 필요 없음, 2 일자리 알선, 3 직업교육, 4 한국어교육, 5 보육, 6 가족이해
주관적 만족	생활만족도	1 매우 불만 ~ 5 매우 만족
국내생활 정착 관련 교육 참여	교육 및 상담, 학습	1 참여, 2 비 참여
일상생활 어려움 사회활동 참여	생활비(4)미납	1 경험 있다, 2 없다
	가족, 친구, 학부모, 지역	1 전혀 없음, 2 1년 1~2회, 3 1달에 1~2회, 4 1주일 1회 이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	1 매우 좋다 ~ 5 매우 나쁘다
	치료포기	1 있다, 2 없다

## IV.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이혼실태

우리사회 국제결혼은 2004년 국내 결혼에서 11.2%를 차지하였고, 그 이후 2010년 까지 계속해서 10% 이상을 유지하면서 ‘보편적’ 결혼유형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결혼 부부의 큰 연령 차이를 비롯한 언어소통의 어려움, 가부장제적 가족생활에서 여성이민자의 인권탄압 등 각종 문제를 드러내면서 가족해체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에 의하면, 2002년 국제결혼가족의 이혼은 1,744건으로서 국내 전체 이혼 144,910건에서 1.2%로 낮았지만 2005년 3.3%로 증가하였고, 2006년 4.9%, 2008년 9.7%, 2009년 9.4%, 그리고 2010년에도 9.6%를 차지하여 최근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이혼 중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 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2002~2004년까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중에서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으로 구성된 가족의 이혼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2005년부터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의 이혼이 앞서기 시작하였고, 계속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국제결혼가족의 이혼 11,245건 중에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의 이혼이 7,904건으로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으로 구성된 가족의 이혼 3,341건에 비해 2.4배(2009년에도 2.4배) 높았다.

표 3.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내 총 이혼건수	119,455	134,608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외국인과의 이혼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총 이혼 중 비중)	(1.3)	(1.3)	(1.2)	(1.2)	(2.4)	(3.3)	(4.9)	(7.0)	(9.7)	(9.4)	(9.6)
증 감	96	196	50	268	1,288	871	1,965	2,535	2,584	437	-447
증 감 륜	6.8	13.1	3.0	15.4	64.0	26.4	47.1	41.3	29.8	3.9	-3.8
한국남성+외국여성	247	387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증 감 륜	24.7	56.7	-1.8	43.9	186.5	52	65.1	45.1	39.5	4.2	-4.8
한국여성+외국남성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증 감 륜	3.9	4.5	4.4	7.4	18.3	3.2	23.1	34.5	11.1	3.0	-1.5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국제결혼 이민자 중 이혼한 여성의 거주지역 및 국적 분포에 의하면, 전체 이혼 여성이민자 7,904명 중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22.4%(1,770명)와 21.6%(1,704명)을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남 6.3%(498명), 인천 6%(471명), 전남 5.5%(43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경기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이혼자 중 중국 국적 이민자(1,172명)를 비롯하여 베트남(292명), 우즈베키스탄(56명), 태국(40명) 순으로 많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우즈베키스탄(32.2%), 태국(31.3%), 중국(24.9%), 몽골(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기타 국적 여성이민자(28.1%)을 비롯하여 중국 국적 여성이민자(2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경상남북도에서는 베트남 국적 여성이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각각 8.8%와 10.9%).

표 4.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중 이혼여성 시도별 및 국적별 현황 (2010년)

(단위: 명)

행정구역별	합 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몽골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기타
전국	7,904	299	1,552	167	128	154	4,705	259	174	466
서울특별시	1,705	37	171	13	19	25	1,223	52	34	131
부산광역시	364	9	84	9	5	2	204	16	9	26
대구광역시	276	10	73	8	5	3	158	4	4	11
인천광역시	471	10	59	7	11	8	330	9	7	30
광주광역시	202	11	50	9	2	7	108	2	5	8
대전광역시	176	10	38	4	1	2	106	4	2	9
울산광역시	146	8	44	4	1	3	72	3	4	7
경기도	1,770	38	292	13	40	37	1,172	31	56	91
강원도	226	16	49	10	5	1	103	6	9	27
충청북도	265	14	51	6	1	13	169	3	4	4
충청남도	391	31	103	9	7	6	193	5	12	25
전라북도	366	17	90	17	3	10	209	3	4	13
전라남도	437	35	122	29	10	16	204	4	5	12
경상북도	388	12	137	16	8	6	178	9	7	15
경상남도	498	20	169	12	9	14	224	10	10	30
제주도	105	21	20	1	1	1	49	6	2	4
국외	118						3	92		23

자료: 통계청(2010).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이혼을 국적별로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먼저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이민자의 경우 2002~2003년 사이에 중국과 일본 국적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국적 여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 몽골 국적 여성이민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2010년 중국 국적 여성이민자가 59.5%(47,052건), 베트남 국적 여성이민자가 19.6%(1,552건), 필리핀 국적 여성이민자가 3.8%(299건), 일본 국적 여성이민자가 3.3%(25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국적별 결혼이민자 수와 무관하지 않다. 즉 2011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중에는 중국 국적 이민자가 4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베트남 국적 여성이민자가 28.6%, 일본과 필리핀 국적 여성이민자가 각각 7.8%와 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국적 여성의 경우 이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베트남이나 일본, 필리핀 국적 여성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행정안전부, 2011).

표 5. 국제결혼 이민자의 국적별 이혼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국적	전체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중국	180	274	835	1,425	2,538	3,654	5,398	5,562	4,705
	베트남	7	28	147	289	610	895	1,078	1,292	1,552
	필리핀	28	43	108	140	165	213	268	285	299
	일본	78	89	114	116	147	157	205	227	259
	몽골	10	6	83	116	132	173	213	176	154
	우즈베키스탄	3	16	67	75	105	112	160	174	174
	캄보디아	0	0	4	6	19	99	178	109	167
	기타	74	91	209	215	217	404	462	475	594
국제결혼 남성이민자의 국적	전체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일본	1,064	1,113	1,309	1,306	1,466	1,587	1,556	1,628	1,638
	중국	51	34	43	123	319	647	1,041	1,064	1,025
	미국	179	219	260	217	235	257	238	263	277
	파키스탄	3	9	15	25	33	35	32	35	38
	방글라데시	6	5	9	11	17	32	33	31	32
	캐나다	7	19	11	21	29	24	34	29	43
	기타 (북한)	54 0	66 0	86 0	86 0	104 0	382 (279)	359 (163)	177 (165)	288 0

자료: 통계청(2010).

다음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남성이민자의 경우 2002~2004년 사이 일본과 미국 국적 남성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하다가 그 이후 중국 국적 남성이민자가 크게 증가하여 일본 및 중국 국적 남성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일본 국적 남성이민자가 49%(1,638건)로 가장 높고, 중국 국적 이민자가 30.7%(1,025건), 미국 8.3%(277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 남성 또한 2008~2009년 동안 일본, 중국, 미국 국적 남성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이혼은 자녀에게 심각한 충격이다. 국제결혼 이민자가 이혼할 당시 자녀를 두고 있는 실태가 어떠한 비교한 <표 6>에 의하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주다가 2010년 다시 증가하였다. 즉 2000년 이혼 이민자 중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 13.0%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 9.7%로 감소하였고, 2006년 8.2%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9.4%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8%까지 증가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국제결혼 이민자 중 이혼자의 국적별 미혼 자녀 유무 여부 (2009년) (단위: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인과의 이혼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미성년자녀 있음	195	223	215	265	362	406	504	736	1,058	1,074	1,209
1명	133	166	153	187	254	287	351	532	763	825	943
2명	51	49	50	69	95	103	126	188	251	216	233
3명 이상	11	8	12	9	13	16	27	16	44	33	33
미성년자녀 없음	1,227	1,379	1,445	1,643	2,807	3,617	5,503	7,800	9,785	10,326	9,823
구성비 (%)											
외국인과의 이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성년자녀 있음	13.0	13.2	12.3	13.2	11.0	9.7	8.2	8.5	9.4	9.2	10.8
1명	8.9	9.8	8.8	9.3	7.7	6.9	5.7	6.1	6.8	7.1	8.4
2명	3.4	2.9	2.9	3.4	2.9	2.5	2.1	2.2	2.2	1.8	2.1
3명 이상	0.7	0.5	0.7	0.4	0.4	0.4	0.4	0.2	0.4	0.3	0.3
미성년자녀 없음	81.9	81.4	82.9	81.7	85.1	86.7	89.7	90.0	86.9	88.3	87.4

자료: 통계청(2010).

## V. 국제결혼 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 1.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일반적 특성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7>에 의하면,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거주지역과 연령, 교육수준, 국적, 거주기간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변수	범주	유배우	이혼	사별	전체	차이검증
성	여성	91.9	92.1	94.8	92.2(1938)	$\chi^2=2.02$ $p>.05$
	남성	8.1	7.9	5.2	7.8( 163)	
거주지역	도시	60.4	78.4	74.1	68.8(1446)	$\chi^2=76.30$ $p<.001$
	도농복합	35.7	20.2	22.3	28.3( 594)	
	농촌	3.9	1.4	3.6	2.9( 61)	
연령	24세 이하	16.8	0.7	2.6	9.1( 191)	$\chi^2=427.78$ $p<.001$
	25~29세	17.0	3.9	5.2	10.7( 225)	
	30~34세	16.5	10.6	6.7	13.3( 279)	
	35~39세	19.4	22.3	17.1	20.4( 428)	
	40~49세	22.4	40.6	28.5	30.2( 635)	
	50세 이상	7.8	21.7	39.9	16.3( 34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3	6.7	17.3	8.0( 167)	$\chi^2=89.73$ $p<.001$
	중학교	25.3	30.4	28.3	27.6( 576)	
	고등학교	44.1	53.3	39.3	47.3( 988)	
	대학 이상	23.2	9.6	15.2	17.1( 356)	
국적	중국(한족)	15.5	14.3	10.4	14.6( 306)	$\chi^2=315.40$ $p<.001$
	중국(조선족)	46.8	79.7	72.0	62.3(1308)	
	일본	4.6	0.4	3.1	2.8( 58)	
	몽골	1.7	0.2	2.6	1.2( 25)	
	베트남	17.1	1.6	3.6	9.7( 203)	
	필리핀	5.0	2.0	4.7	3.8( 80)	
	태국	1.5	0.1	1.0	0.9( 19)	
	기타	7.8	1.7	2.6	4.9( 102)	
거주기간	1년 미만	6.6	1.3	0.5	3.9( 76)	$\chi^2=205.57$ $p<.001$
	1~2년 미만	11.4	2.2	2.7	6.9( 134)	
	2~5년 미만	37.3	24.0	33.5	31.6( 616)	
	5~10년 미만	29.1	36.8	30.8	32.3( 631)	
	10년 이상	15.6	35.9	32.4	25.4( 495)	

\* 전체 사례(2,101명)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무응답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먼저 국제결혼 이민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혹은 사별한 이민자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나이가 많으며, 중국 조선족 국적 이민자가 많고, 국내 거주기간 또한 5년 이상으로 긴 반면 교육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 중에는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에 살고 있거나 20대 이하 연령층이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고, 베트남 및 기타 국적 이민자가 많고,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혹은 사별한 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이민자에 비해 일찍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고, 배우자가 이혼 원인을 제공하거나 혹은 자녀를 돌보는 권리를 얻게 됨으로써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2.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배우자 이혼원인 및 원인별 특성

국제결혼 이민자 중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표 8>에 의하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이민자가 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18.9%, 그밖에 배우자의 외도, 정신장애 및 기타, 학대 및 폭력 때문에 이혼한 이민자가 각각 14.6%, 10.7%, 그리고 10.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의 성격이나 외도

표 8. 국제결혼 이민자의 배우자와 이혼 원인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계(수)	차이검증
배우자의 외도	13.3	31.6	14.6(112)	χ <sup>2</sup> =30.56 p<.001
성격 차이	29.2	40.4	30.0(230)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6.9	3.5	6.7( 51)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20.2	3.5	18.9(145)	
배우자의 학대와 폭력	11.3	0.0	10.4( 80)	
음주와 도박	8.3	12.3	8.6( 66)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10.9	8.8	10.7( 82)	
합계	100.0(709)	100.0(57)	100.0(766)	

가 7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여성이민자 중에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많고, 배우자의 무능력, 배우자 학대나 폭력, 정신장애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 중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혼 원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수준과 혼인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생략하고 유의미하게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표 9> 참조).

여성이민자의 연령에 따른 이혼원인 분석에 의하면, 30세 이하 여성이민자 중에는 배우자의 정신장애나 남편의 외도, 가족갈등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50세 이상 여성이민자 중에는 성격차이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많고, 30~40대의 여성이민자 중에는 남편의 학대와 폭력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성이민자의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고 있는데, 국내 거주기간이 4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배우자의 학대와 폭력, 외도, 음주도박,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이혼한 사람이 많은 반면, 6년 이상 거주한 이주여성 중에는 성격차이나 경제적 무능력, 그리고 가족갈등 등으로 이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성이민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 수준에 따른 이혼 원인에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경우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많은 반면 한국어 사용이 서툰 이주여성 중에는 남편의 정신장애나 외도, 음주도박, 학대와 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여성이민자의 결혼경로에 따라서도 이혼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이민자 중에는 배우자 외도나 폭력과 학대, 그리고 가족갈등으로 이혼한 사람이 많은 반면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나 동료의 소개로 결혼한 여성이민자 중에는 성격차이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종교기관 소개 및 기타 이유로 결혼한 여성이민자 중에는 남편의 외도 및 정신장애로 이혼한 여성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과 같이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이혼한 여성이민자의 경우는 50대 이상으로 국내 거주기간이 길고 한국말을 비교적 잘하며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로 결혼을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혼한 여성이민자 또한 나이가 많고,

국내 거주기간이 길며,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하면서 친척이나 가족의 소개로 결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경우는 심층면접 자료(<표 10> 참조)의 D와 F 여성이민자의 사례와 비교적 일치한다. 여성이민자 D는 45세 나이에 국내에 4년차 거주하며, 남편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한 남편의 구타와 폭력 위협을 견디지 못하다 이혼한 사례이다. 여성이민자 E씨 또한 43세에 국내 거주 4년차로서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구타 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였다.

E씨는 재혼으로 2006년 나이가 많은 한국 남성(연령 차이 14세)과 결혼하였다. 결혼 후 E씨는 남편이 남의 논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농사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E씨는 농사일이 매우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남편은 첫 달에만 용돈을 주고 그 이후부터 준 적이 없고, 옷이나 신발 등도 사주지 않았고, 사더라도 헌옷으로 사주는 등 인간적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농사 품목선택에 실패하면서 큰 빚만 지게 되자 남편은 술을 먹고 구타하기 시작하였다. 남편은 돈을 주지 않아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식당에 다니면서 늦게 퇴근하게 되자 남편은 의처증까지 보이게 되었고 술을 먹는 날이면 심한 욕설과 구타로 이어졌다. 특히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죽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시골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2009년 10월 가출하여 외부 도움을 받아 이혼하였다. 처음 이혼하고자 할 때 남편은 이혼 후 바로 본국으로 출국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가출하여 외부 도움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하였고, 위자료 7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어 전화할 때면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다시 만나기가 무서워서 위자료는 포기할 것이라고 한다(사례 E).

다음으로 남편의 학대와 폭력, 음주 도박이나 정신장애 등으로 이혼한 여성이민자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비교적 짧고, 한국어 사용이 서툴다는 것이 공통적이며, 정신장애 문제로 이혼한 경우 20대 및 30대이며, 학대와 폭력이 이유가 되는 경우는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먼저 정신장애를 가진 남편과 결혼한 B씨는 30세로서 결혼 1년 만에 이혼하였으며, 48세인 F씨는 남편의 학대와 폭력 때문에 결혼 2년 만에 이혼하였다.

2009년 5월 정신장애가 있는 남편과 결혼한 B씨는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계속해서 대화도 없이 관심도 보여주지 않아 정

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결혼 3개월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입덧이 심하여 음식도 먹지 못하고 몸이 약해지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방에 누워 있게 되면서 시어머니로부터 구타와 욕설 등을 받기 시작하였다. 즉 시어머니는 일하기 싫어 피병을 부린다고 욕하면서 때리기 시작하였고, 시어머니의 욕설과 구타 때문에 배속 아이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가출하게 되었고, 다문화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혼하고 2010년 아이를 출산하여 혼자서 키우고 있다(사례 B).

2006년 국내에 들어온 후 2008년 결혼한 F씨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 어오라는 강요에 의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돈도 좀 벌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며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하루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면서 사망 시 자신을 (3억)상속인으로 하는 등 요구조건이 이상하여 거부하였다가 그날 밤 심하게 구타 당하고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구타를 참을 수 없어 이혼하였다(사례 F).

그리고 배우자 및 가족(시부모)의 갈등 때문에 이혼한 이주여성의 경우는 나이가 적고, 국내 거주기간이 길며, 한국어 사용이 용이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배우자나 또는 시부모의 부당한 강요를 견디지 못해 이혼하는 사례로서 A와 G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즉 A는 31세로서 결혼 5년 만에 이혼하였고, G는 37세로서 결혼 5년 차에 이혼하였다. 즉 배우자의 폭행과 더불어 시부모의 언어적 및 육체적 폭력 또한 외국인 여성에게 상처를 주며 이런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이민자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며, 다음 2개 사례는 이런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결혼 후 남편은 한국어 방문교육도 받지 못하게 중단시켰고, 외부출입도 못하게 하며 전화도 바꾸어 주지 않는 등 철저하게 무시하고 고립시켰다. 특히 2년 전에 전처가 마을에 들어와 혼자 살면서 남편은 무관심하였고, 남편에게 구타당하여 움직일 수 없어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는 일하기 싫어한다고 하면서 언어적 폭력과 손찌검까지 하여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외부기관의 도움으로 2010년 이혼하였다(G 사례).

A씨의 시어머니는 수시로 욕을 하면서 구타를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남편과 대화가 없었고, 남편은 또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시어머니가 구타할 경우 덩달아 구타하는 습관까지 갖게 되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욕하고 구타하

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아들과 함께 가출하였고 외부기관의 도움으로 2010년 이혼하게 되었다(A사례).

표 9. 국제결혼 이민자의 특성별 이혼원인 차이 분석

(단위: %, 명)

구분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정신 장애 및 기타	계(수)	차이검증
연령	30세 미만	15.2	21.2	12.1	18.2	3.0	9.1	21.2	100.0(33)	$\chi^2=28.728$ $p<.05$
	30세 이상-40세 미만	11.7	28.6	8.7	20.3	11.3	8.7	10.8	100.0(231)	
	40세 이상-50세 미만	14.4	27.1	3.8	19.5	15.1	8.6	11.6	100.0(292)	
	50세 이상	13.2	36.2	9.2	21.7	5.3	7.2	7.2	100.0(152)	
	합계	13.3	29.2	6.9	20.2	11.2	8.3	10.9	100.0(708)	
거주 기간	4년 미만	18.7	16.5	4.4	9.9	20.9	13.2	16.5	100.0(91)	$\chi^2=89.626$ $p<.01$
	4-6년 미만	24.3	17.6	4.4	20.6	17.6	6.6	8.8	100.0(136)	
	6-8년 미만	6.9	44.1	4.9	26.5	4.9	3.9	8.8	100.0(102)	
	8년 이상	9.6	32.8	9.0	22.1	7.6	9.3	9.6	100.0(344)	
	합계	13.4	29.3	6.8	20.8	11.0	8.5	10.3	100.0(673)	
한국어 수준	매우 잘한다	10.5	30.9	8.2	22.7	13.7	6.3	7.8	100.0(256)	$\chi^2=46.481$ $p<.01$
	잘한다	8.1	35.3	8.7	18.5	7.5	9.2	12.7	100.0(173)	
	보통이다	16.1	25.1	6.0	19.6	11.6	9.0	12.6	100.0(199)	
	서툰 편이다	27.8	13.9	2.8	13.9	19.4	8.3	13.9	100.0(36)	
	매우 서툴다	26.7	6.7	0.0	13.3	6.7	13.3	33.3	100.0(15)	
합계	12.8	28.9	7.2	20.2	11.6	8.1	11.3	100.0(679)		
결혼 경로	결혼중개업체	15.4	29.5	11.5	12.8	12.8	9.0	9.0	100.0(78)	$\chi^2=45.843$ $p<.05$
	가족 / 친척의 소개로	10.1	33.3	6.8	25.6	9.2	6.8	8.2	100.0(207)	
	친구/ 동료의 소개로	14.1	27.7	6.8	21.8	11.2	8.7	9.7	100.0(206)	
	종교기관 외 기타	16.4	20.9	9.0	19.4	8.2	8.2	17.9	100.0(134)	
	합계	13.4	28.3	7.8	21.4	10.1	8.0	10.9	100.0(625)	

표 10. 한국남성과 결혼 후 이혼한 이주여성 대상 심층면접 결과

구분	여성이민자							이혼 이유
	국적	나이	연령차	동거기간	결혼유형	자녀	본국자녀	
A	필리핀	31세	10세	5년	초혼	5세	-	- 배우자의 빈번한 음주 후 구타 -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구타, 밥만 해놓고 혼자 먹게 함 - 배우자의 무관심
B	베트남	30세	5세	1년	초혼	1세	-	- 임신 이후 쉬고 싶지만 일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 구타 및 언어폭력 - 배우자의 정신장애, 대화 없음 무관심
C	베트남	25세	26세	2년	초혼	-	-	- 외부 출입 금지(의처증) - 배우자의 이유 없는 구타, 진단서 6주
D	중국(조)	45세	4세	4년	재혼	-	딸 1명	- 배우자의 구타로 위협을 느껴 가출 - 배우자의 외부출입(취업) 금지 - 남편의 수입 없음, 생활 어려움
E	중국(조)	43세	14세	4년	재혼	-	아들 1명	- 음주 후 환각상태에서 폭행(20회 이상) - 취업 후 늦게 퇴근할 경우 의처증 싸움 - 결혼 2달째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음 - 본국 자녀의 생활 및 치료비 마련 이혼
F	중국(조)	48세	0	2년	재혼	-	딸 2명	- 배우자의 정신장애, 음주(8병) 후 폭행 - 생명보험 가입 거절 후 구타 경찰부름 - 경제적 무능, 취업요구 월 300만원을 벌어야 한다고 강요 및 구타
G	중국(한)	37세	8세	5년	초혼	5세 4세	-	- 배우자의 무관심(전처 마을에 거주)(본인과 자녀는 컨테이너 가건물 별도 거주) - 배우자의 음주 후 폭행(진단서 7주) -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및 구타 - 외출금지, 방문교육도 남편반대로 중단

### 3.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가족형성 차이

국제결혼 이민자의 가족형성과정을 분석한 <표 11>에 의하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동료의 소개로 결혼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배우자가 없는 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들 중 결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 많았고, 초혼보다 재혼인 사람이 많았으며, 현재 본인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 많

고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40% 수준(평균 0.34명)으로 국내 이혼 여성이민자 중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 10%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한 이민자의 경우도 가족이나 친척을 비롯한 친구동료나 종교기관의 소개로 결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친척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많았으며, 부부 모두 재혼한 사람이 많은 반면,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은 1/2 정도로 높았으며(평균 0.83명),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민자 자녀 수 0.89명과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가 이혼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혼 후 많은 여성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와갔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들에 대한 자료가 생산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1.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가족형성 및 가족구성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전체	차이검증
결혼경로	결혼중개업체	17.6	12.6	7.4	14.9( 285)	x <sup>2</sup> =85.52 p<.001
	가족·친척의 소개	26.3	32.6	36.8	29.5( 566)	
	친구·동료의 소개	22.3	33.1	33.1	27.2( 522)	
	종교기관을 통해	5.4	2.2	8.0	4.4( 85)	
	스스로	24.6	15.4	9.8	19.9( 381)	
	기타	3.9	4.1	4.9	4.0( 77)	
국내 입국 목적	결혼	73.4	82.7	64.7	76.3(1,578)	x <sup>2</sup> =85.19 p<.001
	취업	10.0	6.6	6.8	8.4( 173)	
	친척방문	4.8	4.2	11.1	5.1( 106)	
	사업/업무	3.8	1.9	3.2	3.0( 62)	
	유학	3.1	0.4	0.5	1.8( 37)	
	기타	4.9	4.1	13.7	5.4( 111)	
결혼유형	부부 초혼	61.2	28.3	45.7	48.2( 885)	x <sup>2</sup> =191.66 p<.001
	부인 초혼, 남편 재혼	8.1	10.3	6.0	8.7( 160)	
	부인 재혼, 남편 초혼	10.5	15.2	11.3	12.2( 225)	
	부부 재혼	20.2	46.2	37.1	30.9( 568)	
자녀	있음	61.1	27.5	47.2	47.3( 875)	x <sup>2</sup> =184.79 p<.001
	없음	38.9	72.5	52.8	52.7( 974)	
	평균 자녀수	0.89	.34	.83	0.68(1,944)	

반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 중에는 결혼중개업체나 본인 스스로 결혼을 선택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결혼을 비롯한 취업목적으로 국내 입국하였고, 초혼인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현재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 60%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이민자의 경우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결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결혼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한국어 사용 능력 차이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에 따른 한국어 사용능력 분석에 의하면, 배우자 없이 살고 있는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말하기를 비롯하여 읽기, 쓰기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 사별한 이민자가 다음으로 우수하였다. 반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어 말하기를 비롯한 읽기 및 쓰기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런 결과는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길고,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적은 중국 조선족 이민자가 많기 때문이며, 특히 이들은 이혼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표 12.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한국어 사용능력

(단위: 점)

한국어 유형	유배우자	이혼	사별	전체	검증
말하기	2.52	2.12	2.22	2.33	F=32.67 p<.001
읽기	2.56	2.18	2.38	2.39	F=23.74 p<.001
쓰기	2.69	2.24	2.57	2.50	F=24.03 p<.001

주) 1점 매우 잘 한다 ~ 5점 매우 서툴다

## 5.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교육 및 사회활동 참여 차이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에 따라 국내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비교하면 <표 13>과 같다.

먼저 국내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 참여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가 이혼 및 사별 상태에 있는 이민자에 비해 한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가족상담 교육, 임신과 출산 관련 교육, 그리고 자녀양육 및 학습 관련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이민자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의 경우는 각종 교육 참여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혹은 사별한 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래 전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최근 활성화된 이런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또한 임신 출산이나 자녀 양육 관련 교육 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그 필요성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13.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국내생활 정착 관련 교육 참여 차이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계(수)	차이검증
한국어교육	40.1	14.3	20.2	28.3(538)	$\chi^2=144.48$ $p<.001$
가족상담 및 교육	20.3	10.7	12.9	15.9(291)	$\chi^2=29.44$ $p<.001$
임신 및 출산 관련	23.1	7.6	8.9	15.7(287)	$\chi^2=80.27$ $p<.001$
자녀양육, 학습	23.4	12.0	16.3	18.3(335)	$\chi^2=36.14$ $p<.001$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분석한 <표 14>에 의하면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 중에는 본인 가족을 비롯한 배우자 가족이나 학부모 모임, 친구모임 지역사회 모임 등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사별로 혼자 혹은 자녀와 살고 있는 이민자 또한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체가족 이민자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이 없거나 또는 생계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시급한 문제로

인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한계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 중에는 지역주민 모임을 제외한 본국 가족 모임을 비롯한 배우자 가족모임, 학부모 모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 차이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계(수)	차이검증
본인 가족 모임	전혀 없음	26.4	36.3	34.9	30.7(505)	$\chi^2=37.55$ $p<.001$
	1년에 1~4번	47.7	44.0	48.7	46.4(763)	
	한달에 1~2번	19.4	11.1	7.9	15.3(252)	
	1주일에 한번 이상	6.6	8.6	8.6	7.5(123)	
배우자 가족모임	전혀 없음	8.7	76.4	48.3	26.8(367)	$\chi^2=565.70$ $p<.001$
	1년에 1~4번	55.8	17.8	36.4	45.9(628)	
	한달에 1~2번	25.6	2.7	12.7	19.5(267)	
	1주일에 한번 이상	10.0	3.0	2.5	7.8(107)	
학부모 모임	전혀 없음	65.9	70.6	69.1	67.5(526)	$\chi^2=1.95$
	1년에 1~4번	21.5	18.8	20.6	20.7(161)	
	한달에 1~2번	7.9	6.4	7.4	7.4( 58)	
	1주일에 한번 이상	4.7	4.1	2.9	4.4( 34)	
본국 출신 친구 모임	전혀 없음	37.6	49.0	55.4	43.5(738)	$\chi^2=74.17$ $p<.001$
	1년에 1~4번	27.5	33.2	25.7	29.5(501)	
	한달에 1~2번	19.1	12.7	11.5	16.0(272)	
	1주일에 한번 이상	15.8	5.1	7.4	11.0(187)	
지역주민 모임	전혀 없음	74.4	86.4	78.3	79.3(1280)	$\chi^2=32.42$ $p<.001$
	1년에 1~4번	9.5	5.7	7.7	7.9( 128)	
	한달에 1~2번	7.1	3.3	4.9	5.5( 88)	
	1주일에 한번 이상	8.9	4.6	9.1	7.3( 118)	

## 6.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상태 차이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에 따른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한 <표 15>에 의하면, 이혼한 이민자의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임시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혼자 중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아직 찾지 못했거나 기타 이유로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고, 취업을 위해 일 자리 알선을 요구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한 이민자 또한 이혼 이민자와 같이 비슷한 경제활동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해체가족 이민자는 생계책임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취업을 할 경우 이민자로서 상용직 등과 같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취업하지 못한 이민자

표 15.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취업상황

(단위: %, 명)

변수	범주	유배우	이혼	사별	계(수)	차이검증
취업 여부	현재 일하고 있다	42.2	71.9	54.0	55.1(1143)	$\chi^2=260.67$ $p<.001$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	25.6	24.1	25.9	25.0( 519)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32.2	4.0	20.1	19.9( 412)	
고용지위	상용	30.0	22.6	24.3	26.0( 335)	$\chi^2=34.16$ $p<.01$
	임시	35.7	37.8	30.4	36.2( 467)	
	일용	15.3	23.6	27.0	20.2( 261)	
	단독자영업자	6.7	6.1	2.6	6.1( 78)	
	고용주	2.3	2.1	3.5	2.3( 30)	
	무급가족봉사자 기타	2.1 7.8	0.3 7.5	0.9 11.3	1.2( 15) 8.0( 103)	
미취업 이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8.9	23.2	18.3	13.1( 107)	$\chi^2=255.48$ $p<.001$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4.0	6.5	4.9	4.6( 38)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4.9	4.9	6.1	5.0( 41)	
	자녀양육 때문	55.5	13.5	15.9	42.1( 344)	
	한국말이 서툴러서	8.3	1.1	0.0	5.9( 48)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	4.5	0.0	0.0	3.1( 25)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5	1.1	1.2	1.3( 11)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2.2	0.5	1.2	1.7( 14)	
기타	10.2	49.2	52.4	23.2( 190)		
취업 희망여부	예	85.8	79.1	62.2	81.9( 680)	$\chi^2=28.32$ $p<.001$
	아니오	14.2	20.9	37.8	18.1( 150)	
취업지원 요구	도움이 필요없다	3.9	7.4	4.3	4.7( 30)	$\chi^2=57.24$ $p<.001$
	일자리 알선	29.2	41.2	43.5	32.7( 211)	
	직업교육	10.8	11.8	13.0	11.2( 72)	
	한국어 교육	15.6	2.2	8.7	12.2( 79)	
	지녀보육, 양육지원	29.8	18.4	13.0	26.2( 169)	
	배우자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 기타	3.7 7.1	0.0 19.1	0.0 17.4	2.6( 17) 10.4( 67)	

중에는 “외국인”으로서 차별이나 사회연결망이 부족한 탓에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는지 모른다는 기타 이유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고, 취업 요구에서 일자리 알선을 원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 중에는 아직까지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았지만, 일하는 사람 중에는 상용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는 자녀양육 때문인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는 한국어 교육과 자녀양육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7.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일상생활 및 건강상태 차이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 분석한 <표 16>에 의하면, 배우자가 없는 이민자의 생활이 어렵게 나타났다.

즉 전기세 및 수도세를 미납하거나 혹은 생활비를 빌렸다가 아직 갚지 못하거나 또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행위를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사별하고 자녀 등과 살고 있는 이민자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이민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가 20.1%로 유배우자 이민자의 16%에 비해 4.1p% 높았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6.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비율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이혼	사별	계(수)	차이검증
사회보험료 미납	16.0	20.1	14.9	17.5(338)	$\chi^2=5.89$ $p>.05$
전기세·수도세 미납	4.6	10.2	6.4	6.9(132)	$\chi^2=20.93$ $p<.001$
생활비 급전차용	25.8	35.6	35.2	30.5(596)	$\chi^2=21.85$ $p<.001$
질병 치료 포기	11.2	21.9	17.3	15.9(305)	$\chi^2=37.18$ $p<.001$

<표 17>은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활만족도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의 만족도 점수가 3.23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배우자 사별한 이민자가 3.26으로 약간 높은 반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가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에 따른 건강상태에 의하면, 배우자 없이 살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 중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31.8%(사별 이민자는 32.3%)로 일반가족 이민자 11.7%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배우자와 동거 중에 있는 이민자에 비해 이혼하였거나 혹은 사별한 이민자의 건강 및 생활수준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의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의 나이가 많은 반면 교육수준은 낮고,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아도 일용 및 임시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등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표 17. 국제결혼 이민자의 혼인상태별 생활만족과 건강상태 평가 결과

(단위: 점)

주관적 평가		유배우자	이혼	사별	전체	검증
생활수준 만족도*		3.80	3.23	3.27	3.53	F=102.46 p<.001
건강상태	매우 좋음	15.6	6.7	7.8	11.4(237)	χ <sup>2</sup> =181.37 p<.001
	좋은 편	38.5	25.1	19.8	31.4(654)	
	보통	34.2	36.4	38.0	35.4(738)	
	나쁜 편	10.5	24.2	26.0	17.4(362)	
	매우 나쁨	1.2	7.6	8.3	4.4( 92)	

\* 생활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으로 측정된 것임.

## Ⅵ. 연구의 결론

이상과 같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이민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사별한 이민자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거나 교육수준은 낮은 반면 나이가 많고, 국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혹은 친척, 동료 소개로 초혼보다 재혼한 경우가 많았고, 중국 조선족 국적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 중 본국으로 출국했거나 혹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배우자와 이혼 후 국내 거주 조건이 되는 극히 일부 이민자를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계청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2006년 이후 국제결혼 이민자 중 배우자와 이혼한 이민자가 약 4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에는 2,500명 미만으로 낮아 매우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중에 이혼 후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또는 불법체류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지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생산되지 않아(즉 관리부족) 그 진상을 알 수 없다. 이러한 우려는 국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이 2011년 212천명(이민자 142천명, 귀화자 70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결혼 누적 인원 수가 약 40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통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단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유기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민자 중 부부의 이혼은 성격 차이나 배우자의 무능력, 배우자 외도 등이 주요 원인이며, 여성이민자의 경우는 남편의 학대 및 폭력과 음주 및 도박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정신장애를 비롯한 언어소통 및 대화기술 부재, 경제적 어려움, 음주 및 구타 등 이혼이 중첩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 이혼 문제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때 그 가능성이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국제결혼 희망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결혼 이후

에 가족단위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며, 국제결혼에 따른 부부간의 대화기술 및 배려,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 선택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 중 7개 국가 여성과 결혼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이 1일 3시간으로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모든 국제결혼 남성을 대상으로 성격 및 정신적 건강진단 검사를 비롯한 적합한 배우자 선택, 성평등한 부부생활 유도 방법 등 종합적 결혼 관련 소양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때 정신건강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은 상담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은 지역(혹은 권역단위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여성이민자 대상 자조모임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자조모임이 자체 역량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 및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여성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중심에서 가족단위 혹은 3세대가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족해체 이민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반가족 이민자에 비해 우수한 편이나 그것은 이들의 국내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다. 또한 심층면접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남편이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 이민자한국어 교육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와 함께 남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결혼 이민자의 입국단계부터 자녀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및 교육 단계별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입국 단계부터 임신 단계까지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가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취업교육을 담당하며, 임신 및 출산단계에는 지역보건소 중심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담당하며, 자녀양육 및 학습단계에는 과학기술부가 자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이른바 국내 정착 단계별 지원정

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여성이민자 한국어 교육 방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남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결혼이민자는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은 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 희망 남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향후 배우자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출산할 경우 본국 가족의 출산지원 도우미 활용방안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즉 국내에는 지역에 따라 출산도우미(저소득층 및 여성농업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런 제도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며, 만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출산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출산할 경우 출산 전 30일 전부터 출산 후 최대 60일까지 출산도우미를 파견하는데 이때 출산도우미로 본국의 엄마 또는 자매 등으로 한정시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산도우미 제도는 일하는 이주여성에게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해체 여성이민자의 국내 생활 정착을 위해 지원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결혼 해체가족 이민자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고용지위는 불안정하고 경제생활 수준은 낮고 생활만족 수준도 낮고, 사회보험료 미납이나 전기세 및 수도세 미납 등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 이민자 중 배우자 사별이나 혹은 이혼으로 혼자가 되었거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특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은 일과 가정생활 양립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 가족해체 이민자 중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며,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역단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제결혼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단위 여행이나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갖고 있다. 첫 번째 한계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관계로 이혼 여성과 관련된 핵심내용

이 다수 빠져 있어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중에 가족해체 문제는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혼과정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혼한 여성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혹은 무응답 처리가 많아 유효한 자료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체계적인 디자인에 의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박재규는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다문화, 성인지 정책, 노인 등이며, 현재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및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E-mail: pchaekyu21@hanmail.net)

## 참고문헌

---

- 곽배희(1994).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_\_\_\_\_(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두섭(2006). 한국인의 국제결혼 : 인과구조의 이해와 혼인 및 혼인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30(3), pp.25-56.
- 김두섭, 이명진(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pp.33-56.
- 김상입(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 인권센터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김승권(2002). 가족해체의 발생원인 및 규모추정과 정책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서울.
- 김현지, 최혜정(2010).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분석.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김혜영, 변화순, 윤홍식(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pp.37-63.
- 박경애(2000).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한국인구학, 23(1), pp.5-29.
- 박미정(2011).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박순희, 이주희, 안효자, 조원탁(2010) 국제결혼이주가정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pp.185-217.
- 박애경(2006). 가족폭력 실태와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pp.59-70.
- 박재규(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17(2), pp.75-105.
- \_\_\_\_\_(2009).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남편의 가족생활 적응 연구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6, pp.137-163.

- \_\_\_\_\_(2010). 경기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박재규, 이윤애(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주: 전북발전연구원.
- 박현정(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진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안현정(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초당대학교, 전남.
-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전남광주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 (사)광주여성의 전화.
- 양하연(2009). 싱글맘의 심리적 지원체계로서의 자조모임. 한국한부모가정학, 2(1), pp.39-56.
- 이경성(2001). 이혼의 시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6(2), pp.97-119.
- 이계승(2010). 여성 결혼 이민자 부부의 결혼만족과 이혼 의향 결정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전주.
- 이규삼(2000).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아산.
- 이명신(2006). 여성의 잠재적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황과 복지, 22, pp.207-266.
- 이정희(2006). 여성결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 이주재, 김순규(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pp.73-91.
- 이혜경(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포럼 자료집. 아시아이주여성포럼.

- 윤성호(2008).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위. *한국가족복지학*, 22(4), pp.67-94.
- 윤홍식(2003).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3, pp.51-63.
- 전신현(2007). 이혼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차이. *보건과 사회과학*, 20, pp.5-27.
- 전만길(2005). 외국인 주부 한국 실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정기선(2000). 경제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Summer), pp.389-416.
- 정현숙, 유계숙, 임춘희, 전춘애, 천혜정(2000).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 및 재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pp.1-19.
- 조성희(1999).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주미연(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 결정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광주.
- 최진영(2004).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삶, 내다보기. <http://wmigrant.org>.
- 최경석 외(2001). 가족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 최운선(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pp.141-181.
- 통계청(2008). 2007 이혼통계 자료
- \_\_\_\_\_(2010). 2009 결혼통계 자료
- \_\_\_\_\_(2010). 2009 이혼통계 자료
-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서울: 행정안전부.

# The Analysis of the Family Disorganization Reasons and its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Gyeonggi Province

**Park, Chaekyu**

(Gyeonggi-do Family and Women Research Institute)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family disorganization reason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prevent family disorganiz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Gyeonggi Province among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data and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divorced migrants.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women migrants who divorced from Korean men or parted from their husbands by death, compared with those who are currently living with Korean husbands, tend to live in urban area, have lower education attainment, be older, to live longer in Korea.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many women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their cruel treatment or violence and alcoholic or gambling. Furthermore, the interviewed data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various factors such as husband's mental illness, obstacles of verbal communication skills, and economic poverty, drinking or gambling, habits and their mothers-in-law's cruel treatment and violence. From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to prevent the family dis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nd support the women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

**Keywords:**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Disorganization, Divorce Reason, Policy Measure